M - 159 - 2012

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

2012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 개요

- o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박재학 교수
- o 제·개정 경과
- 2012.11 기계분야의 제정지침으로 선정
- 2012.11 분야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.11 총괄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- HSE AFAG704(2006), Excavators in tree work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
 -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굴삭기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11 월 29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M - 159 - 2012

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 안전작업에 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제2절 "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"에 의거 수목작업에서의 굴삭기에 대한 안전작업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수목작업에서 사용되는 굴삭기의 안전작업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며 굴삭기를 사용하는 운전자 및 관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위험성평가(Risk assessment)"라 함은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상해 나 손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 - (나) "소음수준(Noise level)"이라 함은 소음계로 측정한 음원수준을 말하며 소음계에는 A, B, C 특성의 청각보정회로가 들어있다. 보통 A 특성으로 측정되며, A 특성으로 측정된 경우 dB(A)로 표기된다.
 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일반사항

(1) 제조사에 의해 지정된 위험지역 범위를 모든 기계에 분명하고 알기 쉽게

M - 159 - 2012

표시해야 한다. 보통 붐(Boom)의 최대 도달거리의 두 배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된다. 또한 위험지역은 부가장치를 기계에 부착함에 따라 증가할 수 있 다.

- (2) 공중에 설치된 전력선 부근에서 작업할 때에는 경고사인과 함께 기계의 최고 높이, 이동 중 (작업 중은 아님) 기계의 최고높이를 작업장에 있는 모든 기계에 표시해야 한다.
- (3) 굴삭기 운전자는 현장에서의 유지보수작업 또는 연료 주입 시 추락의 위험 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. 적절한 접근 수단과 안전작업 위치가 결정되 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5. 개인 보호구

- (1) 다음의 개인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.
 - (가) 위험성평가 결과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안전모
 - (나) 소음수준이 85 dB(A)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귀마개
 - (다) 연료 및 로프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장갑
 - (라) 접지력과 발목 지지력이 좋은 안전화
 - (마) 현지 기후에 적합한 찢어지지 않는 겉옷
 - (바) 위험성평가 결과로 필요하다고 확인된 가시성을 높은 옷
- (2) 큰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구급상자를 베이스 차량에 구비하여야 한다. 작업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한 대를 베이스 차량으로 지정한다.
- (3) 손을 세척할 수 있도록 물 없이 사용하는 피부 세척제나 비누, 물, 종이타 월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
- (4) 연료, 오일 또는 화학약품 유출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 키트를 구비하여야 하고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.

6. 안전작업

M - 159 - 2012

6.1 작업준비 방법

- (1) 위험성평가로 확인된 작업장소 내 모든 위험요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.
- (2) 전력선, 통신선, 상·하수도, 가스관 등 작업장소 내 지하 및 지상의 유해위 험요인을 체크 및 표시하여야 하며 이들을 가로질러 지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절한 가로지르는 지점을 정하여야 한다.
- (3) 굴삭기 작업은 고립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. 이러한 점도 위험성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며, 콜인(Call-in) 작업이나 2인1조 작업(Buddy system) 등 혐의된 고립작업 방법을 따라야 한다.
- (4) 기계나 작업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작업경로를 선택해야 한다.
- (5) 작업시작 전 적절한 출입 지점을 확인한다.
- (6) 작업시작 전 잠재적인 장애물 및 위험요소 확인한다.
- (7) 기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얕은 토양, 큰 장애물, 연약지반 등을 확인한다.
- (8) 굴삭기에 부딪혀 작업장소 아래쪽의 다른 작업장소나 길로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확인한다.

6.2 작업 시 주의사항

- (1)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고 안전장치와 작업장치들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.
- (2) 기계에 타거나 내릴 때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.
- (3) 기계시동 시 기계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.

M - 159 - 2012

- (4) 이동레버를 작동하기 전 기계가 움직일 방향을 확인한다.
- (5) 후진이나 선회 시 특히 주의해야 하고 경로 상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하다.
- (6)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해야 한다.
- (7) 전력선의 전압이 33 kV를 초과하는 경우 반경 15 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.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반경 9m 내에들어가서는 안 된다.
- (8) 워킹 굴삭기(Walking excavator) 사용 시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해야 한다. 운전실은 가능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9) 기상조건도 기계 조작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.
- (10) 경사지, 연약지반 또는 장애물 위에서의 기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.
- (11) 가능하면 안전한 작업과 이동을 위해 수확 잔류물, 그루터기, 바위 등 장애물은 이동시키거나 피하여야 한다. 또한 경사지에서 이들 장애물들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12) 만약 기계가 미끄러지거나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부착부품들을 가능한 빨리 지면 쪽으로 내려야 한다.
- (13) 전도되는 기계를 피해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.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엔진을 정지시켜야 한다.

7. 기계

7.1 일반사항

(1) 작업을 시작하기 전 기계가 작업장소와 작업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.

M - 159 - 2012

- (2) 기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.
- (가) 안정성과 부양성(Flotation) 트랙의 길이와 폭
- (나) 견인력 그라우저(Grouser) 즉 트랙 돌출부의 높이와 간격
- (다) 지상고(Ground clearance) 지면과 차량의 가장 낮은 부분의 간격
- (라) 기계 방호 작업 중 기계의 배관 및 부품에 대한 손상을 방지
- (마) 조명 작업에 적절한 조명 설치
- (3) 위험성평가로부터 어느 수준의 운전자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여야 한다.
- (가) 운전자 보호구조 (Operator protective structure, OPS) 수확 잔류물이 운전석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드의 형태
- (나) 낙하물 방지구조 (Falling object protective structure, FOPS) 낙하물이 운전석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운전석을 감싸는 프리임 또는 디플 렉터(Deflector)의 형태
- (다) 전복 방지구조 (Roll-over protective structure, ROPS) -기계의 전도위험 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

7.2 기계 유지보수 시 주의사항

- (1) 유자격자에 의하여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.
- (2) 지내력이 좋은 평평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3) 기계가 완전히 정지하였는지, 시동키를 제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. 가능하면 전기시스템을 분리시키는 것이 좋다.
- (4) 움직이거나 떨어질 수 있는 모든 부품을 고정시킨다.
- (5) 적절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.
- (6) 볼트 교체 시 반드시 같은 부품의 볼트로 교체하여야 한다.

M - 159 - 2012

- (7) 유압유 누설을 확인할 때 손을 사용하지 말고 종이나 판지를 사용해야 한다. 압력에 의해 제어되는 유압유는 피부를 관통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를 하여야 한다.
- (8) 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.
- (9) 기계로부터 물건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낙하 방지구조와 같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.
- (10) 복동 램(Double-acting ram)의 파이프가 파괴되었을 때는 작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위치로 붐을 낮추기 위해 다른 제어장치를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화물을 내려야 한다.
- (11) 유지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시스템 내의 유체압력을 작업 시작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. 압력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, 이음부(Joint)를 느슨하게 하여 잔류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.
- (12) 파이프나 호스의 비틀림을 피하기 위해 수리 시 2개의 스패너를 사용해야 한다.
- (13)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.

7.3 기계의 주차

운전석을 떠나기 전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1) 모든 도구와 작업장치는 안전한 위치로 낮추어야 한다.
- (2) 모든 제어장치를 잠갔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3) 엔진을 끄고 키를 제거해야 한다.

7.4 기계 운송 시 주의사항

M - 159 - 2012

- (1) 기계의 너비, 높이, 길이 및 무게를 알아야 하며, 이에 따라 운송기계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.
- (2) 기계를 싣거나 내리기 전에 트레일러가 단단하고 평평한 땅에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 경사로에서 기계를 최대한 저속으로 움직여야 한다. 경사로 표면은 깨끗해야 하고 미끄러짐을 야기할 수 있는 진흙, 그리스 등이 없어야 한다.
- (4) 기계가 트레일러 위에서 회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안전거리 밖에 있음을 확인하고 최대한 천천히 회전해야 한다.
- (5) 회전방지 록을 체결하고 기계를 트레일러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.

8. 비상조치 방법

- (1) 지정된 사람이나 책임자는 매일 매일의 작업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야 하며, 적절한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가능한 경우 연락에 휴대폰, 무선 통신 또는 사전에 준비된 콜인(Call-in)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.
- (2) 사고발생시 사업자는 자신을 찾을 수 있게 자세한 정보를 구조대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(예 좌표, 큰 도로에서의 거리, 접근방법). 작업자는 구조를 필요로 하기 전에 자신의 자세한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.